의료관광 대상 주요국가, 코로나-19에 대한 조치 현황

2020. 09. 22. (화) 기준

* 아래 조치 현황은 정보제공 차원에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 코로나-19에 대한 각국의 대응 조치는 해당 출처 홈페이지,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
China

*** 출처 :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및 각 지역 총영사관**

구 분	내 용	비 고
코로나-19 현황	● 확진자 : 85,291명 (사망 4,634명)	사망률 : 5.4%
대응조치	▶ **입국관련 조치(중국 내 공통사항)** ○ 기존의 유효한 중국 비자 및 거류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 ○ APEC 비즈니스 여행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함. ○ 8.5.(수)부터 △취업, △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△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한국인의 경우,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(https:/www.visaforchina.org)를 통해 비자 신청 가능 ○ 7.27부터 상하이시에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격리 조건 완화 ○ 후베이성 관련 모든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입국 제한 해제 ○ 9.9.부터 모든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탑승 전 3일(72시간) 내 지정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검사(PCR) 후 음성증명서 발급 및 제시 요망(9.8.까지는 5일 내 발급 음성증명서 제시) ○ 변경된 상하이시관내 입국자 격리 정책 · (최종 목적지가 상하이인 경우) 상하이 지정시설격리(7일)+조건부자가 격리(7일) · (최종목적지가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인 경우) 상하이지정시설 격리(3일)+최종목적지지정시설격리(11일) · (최종목적지가 그밖의 지역인 경우) 상하이지정시설격리(14일) ○ 10/1(목)부터 해외 유학 후 귀국하는 학생의 <유학경력증명>발급 중단 ▶ **입국관련 조치(홍콩)** ○ 홍콩 비거주자의 입국 금지(2020.3.25.~) ○ 중국,마카오, 대만에서 입경하는 경우 지난 14일 내 해외 어느 한곳이라도 간 경우 입국거부. ○ 소지비자 유효기간 14일 미만자 입국거부 ○ 중국, 마카오, 대만에서 입경한자는 7월7일까지 14일 격리 실시 ○ 해외에서 홍콩 입국자는 9월18일까지 14일 격리 실시 ○ 6.1부터 홍콩 국제공항의 경유는 가능 ▶ **입국관련 조치(대만)** ○ 3.19.부터 외국인 대상 대만 입경 금지(유효한 대만 방문비자 포함) ○ 대만공항 내 항공기 환승 금지(4.23~) ○ 대만 거류증, 외교공무증명서, 특별히 허가받은 인사 등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○ 3.21.(당일 포함) 이전에 무비자, 도착비자, 체류비자로 대만을 방문한 외국인 및 대만 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 대상 제4차 일률적으로 체류기간 30일(총 120일 연장)자동 연장.(6월15일기준) ○ 대만은 8월1일부터 외국인 의료목적의 입국을 허용 (건강검진 의료미용 제외)	*** 출처 및 참고링크** 1.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및 각 지역 총영사관 http://overseas.mofa.go.kr/upload/cntnts/cn-zh/visa_new.pdf 2. 각 지역 정부망 http://www.gov.cn/ 3. Bendibao(本地宝) http://heb.bendibao.com/news/202049/54293.shtm 4. 대만위생복지질병관리본부 https://www.cdc.gov.tw/ 5. 대만외교부 영사국 https://www.boca.gov.tw/mp-1.html
기 타	○ **(중국)**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○ **(중국)** 중국 항공편 운항 코로나19 이전 대비 90%까지 회복 ○ **(중국)** 베이징행 국제선 직항노선 재개 ○ **(대만)** 7.16(목) 대만 타오위안국제공항에 코로나19 검사소 설치 ○ **(마카오)** 중국인외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계속 유지 ○ **(대만)** 9.1(화)부터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방식을 타액검사법으로 변경	9.9부터 모든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탑승 전 3일(72시간) 내 지정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검사(PCR) 후 음성증명서 발급 및 제시

Japan

* 출처 :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및 각 지역 대한민국 총영사관

구 분	내 용	비 고
코로나-19 현황	● 확진자 : 79,142명 (사망 1,508명)	사망률 : 1.9%
대응조치	▶ **사증발급 관련** ○ 사증 제한 9.1부터 당분간 정비 ▶ **입국관련 조치** ○ 한국은 현재 일본 정부에 의해 감염증 위험 정보 레벨3(도항 중지 권고)에 해당, 14일내 한국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 원칙적으로 입국 거부 ○ 입국 거부 대상 13개국 추가, 총 159개국 ○ 아시아 5개국에 입국제한 완화 - 대만,캄보디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 등 5개 국가 입국 제규 9.8부터완화 ○ 코로나19 음성 진단서 제출 및 입국 후 - 14일 자가격리 준수 후 도쿄 올림픽 선수단 입국 허용 ▶ **입국거부 예외** ○ 특별 영주권자, 일본인의 배우자,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정주자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(이러한 체류 자격을 갖지 못한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일본인의 자녀를 포함)이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○ 인도적 사유에 의한 재입국 허가(6.12) : 인도적으로 배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인 사정에 따라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○ 비즈니스 목적 입국 허가 ○ 9.1(화)부터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해제 - 일본 체류자격 보유자는 9.1. 이후 아래 절차에 따라 재입국 가능 - 8.31.까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은 주한일본대사관에서 받은 「재입국관련 서류제출 확인서」와 72시간 이내 취득한「검사증명」을 소지 - 9.1.이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은 출국 전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받은 「수리서」와 체류국 출국 전 72시간 이내 취득한 「검사증명」 소지 - 수리서를 교부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입국 거부 ▶ **자가격리 조치** ○ 입국 전 스스로 자택 혹은 시설, 교통(자차, 렌트카 등) 확보 ○ 비용 모두 본인 부담 ○ 출국 전 : 특별 비자 신청, 활동계획서 제출, 14일간의 건강 모니터링, PCR 조사 결과 증명 ○ 입국 전 : 공항에서 PCR 검사, 건강상태 등 질문표 제출, 활동계획서 제출, 접촉확인 어플 도입 ○ 입국 후 : 대중교통 사용 금지, 14일간 격리, 건강상태 확인, 위치정보 저장 ○ 전세계발 모든 입국자(일본인 포함) 대상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14일간 대기 및 대중교통의 이용 자제 요청, 한국 등 입국 금지 국가에 체류 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 PCR 검사 실시	주한일본대사관 : https://www.mhlw.go.jp/content/000618379.pdf 위생노동성 : https://corona.go.jp/expert-meeting/pdf/sidai_r020618.pdf#search=%27%E6%B4%BB%E5%8B%95%E8%A8%88%E7%94%BB%E6%9B%B8+14%E6%97%A5%E9%96%93%E3%81%AE%E5%81%A5%E5%BA%B7%E3%83%A2%E3%83%8B%E3%82%BF%E3%83%AA%E3%83%B3%E3%82%B0%27
기 타	▶ **항공운항 관련** ○ (항공, 선박) 한국·중국발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(7.22~당분간) ▶ **특이사항** ○ 한-일 무사증 제도 임시 중단 연장조치 (당초 6월까지에서 한 달 연장조치 : 3/7~당분간)	- ANA항공 : 10월말까지 비운항 - JAL항공 : 10월말까지 비운항 - 피치항공 : 10월24까지 비운항

▮ CIS(러시아, 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)

* 출처 : 주알마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및 주러시아 대한민국
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

구 분	내 용	비 고
코로나-19 현황	● 러 시 아) 확진자 : 1,098,958명 (사망 19,349명) ● 카자흐스탄) 확진자 : 107,307명 (사망 1,671명) ● 우즈베키스탄) 확진자 : 51,640명 (사망 433명)	사망률 1.8% 사망률 1.6% 사망률 0.8%
대응조치	▶ 러시아 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조치 ○ 7.15.부터 러시아 입국 외국인 대상 도착 3일전 받은 코로나 19 진단 검사(PCR 테스트) 음성확인서나 항체 생성 확인서 제출시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면제(7.14) ※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도착 3일 이내 코로나 진단 검사 시행, 양성일 경우 지정시설에서 추가 검사 결과 음성 및 회복 시까지 격리(운송 항공사에 따라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비행기 탑승 불허 가능) ※ 고용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○ 한국도착 48시간전 발급받은 코로나19무증상관련 건강증명서 제출 (영어 또는 국문) ▶ 카자흐스탄 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조치 ○ 6.20 이후 한-카 정기항공편 이용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면제 ○ 영주권 소지자 등에 대한 제한적 입국 허용은 유지 ○ 6.15 카자흐스탄 보건당국은 6.20 이후 국제선 정기항공편 운항 재개와 관련, 한국 등 5개국 출발 정기항공편 이용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면제한다고 발표함. ○ 1번 그룹 국가(한국, 중국, 일본, 조지아, 태국) 출발 정기항공편 이용 입국자 대상 ▶ 우즈베키스탄 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조치 ○ 6.15부터 일부 대상자에 대한 국제선 항공을 통한 입국 허용 △외교관 및 가족, △기진출 외국인 기업/기관 소속 전문가, △치료목적, △직계가족 방문, △우즈베키스탄 환승 국제여객(외교적 요청이 있는 경우), △우즈베키스탄 내 장기체류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○ 9.3-15간 한국발 입국자 대상 PCR 음성확인서(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, 영어 또는 노 어본 및 격리동의서(거주등록 주소지, 격리시설 지정호텔 등 2주간 격리) 의무 제출 ※ 9.15 이후 한국 등 방역등급 재조정 예정 ※ 9.20.까지 한국 포함 황색국가발 입국자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(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, 영어 또는 노어본) 제출 의무 ※ 방역등급 재조정 시 입국 관련 조치 변동 가능하므로 주의 ▶ 사증발급 관련 ○ 카자흐스탄 -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6.29(월) 일반여권 소지 우리 국민의 3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 - 7.28부터 비자신청 업무 재개 (결혼이민(F6), **의료관광(C-3-3))** (단, 중증 외국인환자로 의료진 판단에 따른 진료 연속성,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) ○ 우즈베키스탄 - 우즈베키스탄 입국을 위해서 유효한 사증을 소지해야 하며, 단기 방문해야하는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을 통해 개별 허가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.	* 출처 및 참고링크 1. 주알마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://overseas.mofa.go.kr/kz-almaty-ko/brd/m_8315/view.do?seq=1337578&srchFr=&srchTo=&srchWord=&srchTp=&multi_itm_seq=0&itm_seq_1=0&itm_seq_2=0&company_cd=&company_nm=&page=1 2.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http://overseas.mofa.go.kr/uz-ko/brd/m_8555/view.do?seq=1346899&srchFr=&srchTo=&srchWord=&srchTp=&multi_itm_seq=0&itm_seq_1=0&itm_seq_2=0&company_cd=&company_nm=&page=1
기 타	▶ 항공 운항 관련 등 (러시아) - 9.27.부터 한국(인천)과 정기 항공편 운항 재개하여 입국 허용 - 대한항공 : 9.1~9.30 비운항 (모스크바, 블라디보스톡) 9.1~9.30 비운항 (상트페테르부르크, 이르쿠츠크) ▶ 항공 운항 관련 등 (카자흐스탄) - 에어 아스타나 항공 : 7.1부터 월요일 금요일 - 아시아나 항공 : ~9 .29, 10.13 특정일자 운항 ▶ 항공 운항 관련 등 (우즈베키스탄) - 아시아나 항공 : ~ 10.24 주 1회(월) 운항 - 대 한 항 공 : 9.1 ~ 9.30 비운항 ▶ 특이사항 ○ (카자흐스탄) 8.31부터 추가적 검역 완화 ○ (카자흐스탄) 한국 등 정기 항공편 운항이 재개된 국가로의 자국민 출국 허용 (6.22) ○ (카자흐스탄) 제3국 출발, 카자흐스탄 도착 항공편 탑승 제한) ○ (우즈베키스탄) 8.15부터 검역 완화	

Vietnam

* 출처 : 주베트남대한민국 대사관 및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

구 분	내 용	비 고
코로나-19 현황	● 확진환자 : 1,063명 (사망 35명) 9/2(수) 이후 2주 간 감염 사례 없음	사망률 3.3%
대응조치	▶ **사증발급 관련** ○ 3.22.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○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(2.29.기준) ▶ **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조치** ○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 중단(3.17.기준) ○ 모든 입국자 14일 시설격리, 베트남 도착 후 2차례 진단검사 실시 ○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발급된 비자면제증의 효력 중단(한국의 경우 3.12.부터 이미 중단) ○ 특수 상황(전문가, 사업가, 고급기술인력)에 따른 비자 발급을 통해 베트남 입국 ○ 무비자 및 비자면제증서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고 베트남이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를 제출 ▶ **입국거부 예외** ○ 외교, 공무 목적 방문 ○ 주요 대외행사 참석의 경우(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) ○ 특수 상황(전문가, 사업가, 고급기술인력)에 따른 비자 발급 ○ 무비자 및 비자면제증서로 입국하는 경우,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고 베트남이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 제출 ※ 모든 입국자 14일 시설격리, 베트남 도착 후 2차례 진단검사 실시	- 음성판정 확인서에는 해당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국적, 여권번호, 해당국가내 주소, 베트남내 체류주소, 검사기관명, 검사샘플 채취일, 검사일자, 검사방법, 검사 결과, 입국 예정일 등 정보가 있어야 하며, 검사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일간만 유효 (출처: 외교부 홈페이지)
기 타	▶ **항공운항 관련** ○ 진에어 (인천-하노이) : 9.2~9.27 수목토일 대항항공 (KE679/680) : 인천-하노이 10.1~10.31 비운항 하노이-인천 10.1~10.31 주3회 운항 아시아나(OZ733/734) : 인천-하노이 ~10.24 비운항 하노이-인천 ~10.24 주 3회 (월,수,일) 운항 ▶ **특이사항** ○ 한국에 대한 특별여행 주의보 발령 중 (~8/19 : 1개월마다 연장 여부 검토 중)	-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

Thailand

* 출처 : 주태국대한민국 대사관

구 분	내 용	비 고
코로나-19 현황	● 확진환자 : 3,506명 (사망 59명) ※ 코로나-19, 비상 사태령 9.30까지 재연장	사망률 : 1.7%
대응조치	▶ **사증발급 관련** ○ 한-태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(2020.4.13.부터) * 외교·공무여권 소지자 제외 ▶ **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조치** ○ 7.1.부터 제한적 입국 허용 ○ 입국 전 : 출국 14일 이전 위험지역 방문 및 모임 자제, 주재 발행 입국허가증 (COE), 비행적합 건강증명서, 입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(RT-PRCR 방식), 10만불 이상의 치료비 (코로나19 치료 포함) 보장 보험가입증명서, 정부지정격리장소 예약 서류, 출발 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 ○ 입국 후 : 입국 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, 필수작성서류 제출 모니터링 시스템/어플리케이션 설치, 정부지정장소에서 최소 14일간 격리 및 관련 규정 준수, RT-PCR 방식의 코로나 검사	외교부 : http://www.0404.go.kr/dev/notice_view.mofa?id=ATC000000007949&pagenum=1&st=title&stext=
기 타	▶ **항공운항 관련** ○ 대한항공 (KE651) : 인천-방콕 10.01~10.24 비운항/10.25~10.31 비운항 (KE652) : 방콕-인천 10.01~10.24 매일 운항/10.25~10.31 비운항 아시아나항공 (OZ741) : 인천-방콕 ~10.24 비운항 (OZ742) : ~10.25 주 2회 (수, 금) 진에어 (LJ001) : 매일 9.1~9.28	